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보완 설계 지침

- 제 3장 정거장내 시설 -

3.4.2 외부계단(출입구)

3.4.2.1 권고사항

(1) 설치 위치

- 1) 각 방향에서의 원활한 접근 및 지상의 다른 대중 교통수단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계단 위치를 결정한다.
- 2) 외부계단은 기존의 보도폭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능한 녹지 및 공원 등에 설치하며, 나대지 등의 공유지를 적극 이용한다.
- 3) 보도상에 설치할 경우 보차선을 조정하거나 도로법면을 조정하여 잔여 보행폭을 확보한다.
- 4) 사유지의 침범을 가급적 억제한다.
- 5) 보도상의 잔여 보행폭이 2.0 m 미만인 경우에는 보차선 조정, 건물의 후퇴선 활용, 인접한 대형건물의 출구 활용 등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사유지를 점용하여 보도폭을 확보하는 등의 대책을 미리 강구한다. 다만, 기존 외부계단(출입구)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설치 개소

정거장의 입지조건, 주변역세권, 승객접근의 용이성, 피난대책, 도로여건, 승객 동선의 단순화 등을 고려하여 설치개소를 정한다.

(3) 설치기준

- 1) 계단석의 크기는 일반계단은 W330 mm × H165 mm를 표준으로 하며, E/S와의 병행계단은 설치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 2) 눈 또는 비로 인하여 승객이 출입구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눈·비 차단시설을 설치한다.

3) 약시자의 계단부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시·종점부 계단코를 특수색깔 처리한다.

3.4.2.2 기준사항

(1) 설치 기준

1) 최소폭

(가) 최소폭은 3 m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라도 2 m 이상으로 한다. 단, E/S와 병행 시에는 1.5 m 이상으로 한다.

(나) 보도상에 설치할 경우 잔여보행폭은 2.0 m 이상으로 한다.

(다) 진입부의 계단참의 길이는 최소 1.2 m 이상으로 한다.

(라) 노면과 계단참 사이는 장애인을 위하여 유효폭 1.2 m 이상의 경사로를 설치한다.

(마) 경사로의 전면 1.5 m 이내에는 지장물이 없도록 한다.

2) 기타 사항

전면 최소 공간 등의 사항은 내부계단의 기준을 준용한다.